



규정 및 지침

4단계 BK21 사업 충남대학교 약학과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

목 차

■ 사업단 관리운영 규정	3
■ 참여교수 선발 및 지원 지침	11
■ 신진연구인력 선발 및 지원 지침	17
■ 참여대학원생 선발 및 지원 지침	27
■ 국제협력사업 운영 및 지원 지침	39
■ 산업체 대응자금 운영 및 산학협력 관련 지침	53
■ 성과급 운영 지침	58
■ 참여인력 논문 게재료 지원 지침	76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
관리운영 규정

4단계 BK21 사업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

4단계 BK21 사업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

관리운영 규정

제정 2020. 12. 01.

개정 2021. 01. 25.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의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이하 ”4단계 BK21 사업“) 미래인재양성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원칙을 제정하여 사업단에서 주관하는 제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단 목표) 본 사업단은 충남대학교 약학대학에서 교육부 4단계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아 약학 및 응용생명과학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국내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약학 및 응용생명분야 고급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창의적이고 국제적인 수준의 신진연구인력 양성
3. 산학협동 및 학연협동 강화
4. 교육체제의 실질적 구조조정을 통한 대학교육의 개혁
5. 세계수준의 외국대학원 벤치마킹을 통한 국제협력 추진

제3조(사업기간) 본 사업단의 사업기간은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연도) 본 사업단의 사업비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의 경우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마지막 차년도는 2027년 3월1일부터 2027년 8월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적용범위) 본 사업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관련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지침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단의 내부지침에 의하고 내부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충남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 장 조직 및 업무

제6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충남대학교 총장이 임명한다.

② 사업단장은 교육부의 4단계 BK21 사업 운영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단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작성
2.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사업 결과의 자체 평가, 보고 및 성과 활용
5. 사업 참여교수의 선정, 변경, 제외
6. 산업체와의 교류, 연계 및 공동연구 협정체결
7. 사업단 자체 예산에 의한 연구교수, 전임연구원, 사무원의 임명 및 해임
8. 연구팀 구성 및 연구팀장의 임명 및 해임
9. 관계 법령의 준수
10. 참여대학원생의 선임·교체·해임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 규정에서 사업단장의 권한으로 한 사항

제7조(사업단의 구성) ① 본 사업단은 사업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총괄부, 교육연구부, 산학협력부 및 행정사무요원을 둔다.

② 사업단의 연구수행은 3개 세부 과제수행 팀으로 구성한다.

제8조(기능) 사업단의 각 조직에 대한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기획총괄부는 사업단 발전계획 수립, 예산 및 결산, 학생해외연수 및 학회참가지원, 연차보고서 및 평가자료 작성, 교과과정 개편, 초청 세미나 및 학술 심포지엄 개최,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한다.
2. 교육연구부는 학생 연구장학금 지원, 4단계 BK21 사업단 홍보 및 책자 제작, 교수 및 학생의 업적 및 성과 관리 (홈페이지 관리), 교과과정 운영 및 개편, 워크숍, 연차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산학협력부는 Post-Doc. 및 연구교수 채용 및 관리, 기업대응자금 관리, 자체평가 진행, 산학연 협력 및 국제협력 추진, 산학강좌, 산업체현장실무교육, 연구결과의 사업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행정정보조요원은 문서 및 정보 관리, 교육부, 국가발전위원회, 대전시, 충청남도, 충남 지역단체 및 협력대학 간의 행정 협력, 각종 정보제공 및 자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3 장 예산집행과 결산

제9조 (사업비 사용 및 결산) ① 본 사업에 대한 제반 재원은 국고지원금 및 기타 외부 자금 등으로 한다.

② 사업비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회계 안에서 본 사업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분리하되,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한다.

③ 사업단의 각 집행부에서 사업단장의 승인 하에 사업비를 집행하며 운영위원회에 회기별 사용 내역을 보고한다.

④ 본 사업에 수반되는 회계업무는 정부의 회계예산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용한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예산의 책임) 사업단장은 사업단 전체의 예산편성, 조정, 통제 등 예산전반에 관한 총괄 책임을 진다.

제11조(내부통제) ① 사업단장은 당해 사업기간이 종료 된 후 3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당해 사업기간 종료 시 그 당해 예산은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교육부 지침과 사업단장의 권한으로 이월집행 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업단장은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사업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예산의 전용) 편성, 확정된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단장의 승인을 얻어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편성 시 전용을 허용하지 않은 과목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할 수 없다.

제14조(결산) ① 사업단장은 차년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사업기간 동안 추진한 사업결과를 포함하여 사업결산 및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에 차년도 국고지원 요구서와 동시에 제출한다.

② 사업결산 및 정산서 작성 서식은 교육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5조(운영위원회) ① 본 사업단의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을 포함하여 총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사업단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 위원 이외의 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단에 소속된 운영위원회는 사업부에 참여하는 학사조직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사업단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은 필요시 실무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해산에 관한 전결 권한을 갖는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획
3. 실행예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5 장 자체평가위원회

제17조(목적) 본 사업단의 주요 업무와 결과, 교육-연구-산학협동사업의 결과 및 기타 사업단의 수행실적을 평가 및 자문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제18조(구성)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고 평가위원은 참여주체 내부와 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사업단장이 위촉한다.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소집)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이 필요에 의해 소집한다.

제20조(심의사항)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단의 주요 업무와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 6 장 국제화평가위원회

제21조 (국제화평가위원회)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국제화 관련 업무의 평가 및 자문을 위하여 국제화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국제화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국제화평가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며, 위원은 학교, 연구소, 산업체, 지자체 관계자들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외국기관 소속의 평가위원은 서면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제 7 장 대학원생 지원

제22조(자격) ① 지원대상 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전일제 석박사 대학원생에 한하며, 전일제 대학원생은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4년 이내, 석박사통합과정 6년 이내의 학생 중에서 선발한다.

② 대학원생 지원은 사업단 참여학생의 70% 이내로 한다.

제23조(선발) ① 참여교수가 추천하는 석·박사과정 학생으로서 지원학생의 선발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② 참여 지도교수의 요구에 의한 장학금 수혜자의 교체 또는 중단은 학기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이 자퇴 또는 휴학 시에는 지도교수는 사업단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장 신진연구인력

제24조(운영) ① 운영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초빙기간, 초빙목적, 지원급여액 등 모든 관련사항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의 범위로 하며, 최대 4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4단계 BK21 사업 참여 교수와 한 조가 되어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③ 신진연구인력의 시간강의는 학기 당 6학점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제외한다.

제25조(신진연구인력 선발) ① 신진연구인력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은 충남대학교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② 신진연구인력 구성은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이 2/3 이내가 되도록 하며, 계약교수는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과 충남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2/3가 이내가 되도록 한다. 단, 3명 미만 채용 시에는 예외로 하며, 취득 학위가 충남대학교라 하더라도 취득 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충남대학교 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신진연구인력 배정) ① 선발은 국내외 홍보를 통하여 수시로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지원자는 지원서에 추천교수를 명시할 수 있다.

② 해당교수별 배정 신진연구인력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장 국제협력사업

제27조(목적) ① 본 사업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한국의 독창적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국제적인 수준의 고등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동 사업 추진에 있어 선진 외국대학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선진국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사업프로그램) 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1. 국제학술회의 국내 개최
2. 해외학술회의 참가
3. 해외단기연수
4. 해외장기연수
5. 외국인교수 초빙
6. 해외석학 초청 세미나

제29조(경비 지원) ① 지원금액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신청회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30조(참가 적용범위) 지도교수,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 공동참여 또는 참여대학원생의 단독 참여로 연구결과 발표를 위해 국제적 수준의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단기간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해외연수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1조(연수기간) 단기 해외연수는 2주 이상, 장기 해외연수는 4주 이상으로 한다.

제32조(연수비 지원) 단기 및 장기 해외 연수비의 경우는 공무원 여비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해외석학 지원내용) 해외석학을 초빙하는 경우 경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항공료 및 체재비 : 실비로 지원
2. 기타경비 : 세미나비 등 1,000불 이하

제 10 장 기 타

제34조(준용규정) 이 지침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 4단계 BK21 사업 운영지침 및 충남대학교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시행세칙)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참여교수 선발 및 지원 지침

4단계 BK21 사업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

참여교수 선발 및 지원 지침

2020. 12. 1. 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은 4단계 BK21 사업인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의 참여교수의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참여교수는 약학대학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전임강사 이상) 수의 70% 이상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업단 최소 교수 수인 1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휴직자는 당해년도 사업에 참여교수가 될 수 없다.

제3조(연구실적) 참여교수는 1인당 평균 연구실적을 최근 3년간 4편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연구실적 환산방법은 4단계 BK21 사업공고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SCI(E)급 학술지 게재 논문은 주저자, 공저자의 구분 없이 교수별로 각 1건으로 인정한다.

제4조(지원) 참여교수는 4단계 BK21 사업비의 국제협력 경비, 성과급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5조(의무) 참여교수는 4단계 BK21 사업에서 요구하는 연구실적, 우수성과사례 등 관련된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또한 참여교수는 대학원생 지원비(연구장학금)를 받을 지원대학원생과 국제협력 경비를 지원 받을 참여대학원생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교체) ① 사업단이 계획한 성과지표 달성의 수월성을 위하여 내부자체평가를 기준으로 매학기 참여교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신청 시기는 차기 학기의 1개월 이전에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교수를 교체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결정하고 해당 서류를 갖추어 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득한다.

제7조(증원) ① 신규로 참여하는 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근 3년간 성과가 사업단의 평균 성과지표보다 우수하여야 한다.

② 신규참여교수는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결정하고 해당 서류를 갖추어 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득한다.

제8조(참여교수 평가) ① 사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참여교수 간의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성과 달성도를 평가한다.

② 사업성과 달성도는 사업 참여도 영역, 교육 영역, 연구 영역, 산학협력 영역, 국제협

력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사업단 자체 예산의 성과급 차등지원, 참여교수 변경 등에 활용한다.

③ 사업성과 달성도 평가는 매년 회계 만료 2개월 이내에 1회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학기별로 중간평가를 할 수 있다. 평가기준은 <별첨1>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참여교수 평가기준

1. 평가기간 : 평가 주기는 1년이며 해당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임
2. 평가항목
 - 1) SCI(E)논문 (참여율 및 IF고려)
 - 2) 특허 (등록)
 - 3) 기술이전 실적
 - 4) 국제학회 포스터 발표 및 국제학술활동
 - 5) 연구비
3. 평가지표
 - 1) 논문 IF \times 참여비율 (4단계 BK21 사업 기준) \times 15 \times 가산점
(가산점은 학문분야 상위 10% 잡지와 IF 5점 이상: 2, Q1등급: 1.5)
 - 2) 특허등록은 국내특허의 경우 20/발명자 수, 국제특허의 경우 80/발명자 수
 - 3) 노하우를 포함한 기술이전금액(원)/20만원, 기술이전 건당 20점을 추가로 부여
 - 4) 국제학회 포스터 발표 점수 = 2점/회 (교신저자에 한함/별도표시가 없을 시 마지막 저자)
 - 5) 국제학술활동 : 국제학회에서 좌장, 구두발표(초청강연포함) 및 수상 10점/회 (국제학회는 4단계 BK21 사업 기준)
 - 6) 연구비는 총액/250만원 \times 가산점
(단, 가산점은 정부연구비는 1, 산업체 연구비는 2, 국외연구비는 5)

<저널 논문편수 환산공식>

- ▶ 주저자 1인의 논문 환산 편수 = $\min(1/(m+0.5), 0.5)$ (단, $n=0$ 일 때는 $1/m$)
 - m: 주저자(제1저자+교신저자) 수
 - n: 기타저자(주저자를 제외한 저자) 수
 - T: 총 저자 수 (= m + n)
- ▶ 기타 저자 1인의 논문 환산 편수 ($n>0$) = $\{1 - m * \min(1/(m+0.5), 0.5)\} / n$

<저널 논문 환산 편수에 대한 예시>				
주저자 수(m)	기타저자 수(n)	주저자 1명의 논문 환산 편수 $\min\{1/(m+0.5), 0.5\}$	기타저자 1명의 논문 환산 편수 $(1 - \text{주저자총점수})/n$	전체 저자 논문 환산 편수 합
1	0	1	0	1
1	1	1/2	1/2	1
1	2	1/2	1/4	1
1	3	1/2	1/6	1
2	0	1/2	0	1
2	1	2/5	1/5	1
2	2	2/5	1/10	1
2	3	2/5	1/15	1
2	4	2/5	1/20	1
3	0	1/3	0	1
3	1	2/7	1/7	1
3	2	2/7	1/14	1
3	3	2/7	1/21	1
3	4	2/7	1/28	1
4	0	1/4	0	1
4	1	2/9	1/9	1
4	2	2/9	1/18	1
4	3	2/9	1/27	1

참여교수 선발 기준

신청자 성명		(인)	
평 가 항 목		점수 산출내역	점수
논문		IF × 참여비율 × 15 × 가산점 ¹⁾	점
2) 특허	국제특허등록	80점/발명자 수	점
	국내특허등록	20점/발명자 수	점
3) 기술이전 실적		20만원 당 1점	점
		건당×20점	점
기타 연구관련	4)국제학회 포스터 발표	횟수×5점	점
	5)국제학술 활동 좌장, 구두발표 및 수상	횟수×10점	점
연구비		총액/250만원 × 가산점 ²⁾	점
총계 (점)			점
<p>※ 평가 주기는 1년이며 해당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임</p> <p>1) 가산점은 학문분야 상위 10% 잡지와 IF 5점 이상: 2점/Q1등급:1.5점</p> <p>2) 가산점은 정부연구비:1, 산업체 연구비: 2, 국외연구비:5</p> <p>3) 특허는 산학협력단, BK21 사업에 참여한 기업체 등 기관이 등록인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p> <p>4) 노하우를 포함한 기술이전 실적</p> <p>5) 국제학회 포스터 발표 = 교신저자에 한함/별도표시가 없을 시 마지막 저자</p> <p>6) 국제학회는 4단계 BK21 사업 기준</p> <p>※ 참여교수는 1인당 평균 연구실적을 최근 3년간 4편 이상 유지하여야 함(SCI(E)급 학술지 게재 논문은 주저자, 공저자의 구분 없이 교수별로 각 1건으로 인정)</p> <p>※ 참여교수는 4단계 BK21 사업비의 국제협력 경비, 성과급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음</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년 월 일 </div>			
4단계 BK21 사업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 귀하			



신진연구인력 선발 및 지원 지침

4단계 BK21 사업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

신진연구인력 선발 및 지원 지침

2020. 12. 1. 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은 4단계 BK21 사업의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의 신진연구인력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신진연구인력은 박사후과정생(Post-Doc)과 계약교수(충남대학교초빙교원규정, 초빙교수)를 의미한다.

제3조(선발·임용) ① 신진연구인력 구성은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2/3 이하로 제한한다(1명 채용 시 예외). 계약교수는 박사 후 연구경력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 1년 이상인자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취득자 2/3 이내, 충남대학교 학사과정 졸업자 2/3 이내로 제한한다. (3명 미만 채용 시 예외)

② 신진연구인력은 필요 시 공개채용 및 교수의 추천을 받아 BK21 사업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③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4단계 BK21 사업단에서 신진연구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을 요청한 교수를 다음과 같이 순위를 정하고 우선 순위부터 지원한다.

가. 1순위: 4단계 BK21 사업에서 최근3년간 신진연구인력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나. 2순위: 4단계 BK21 사업단에서 신진연구인력을 1년 미만 지원 받은 경우

다. 각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 등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신진연구인력 선발위원회는 추천된 신진연구인력의 선발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⑤ 신진연구인력은 4단계 BK21 사업 신진연구인력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제4조(지원) ① 신진연구인력은 4단계 BK21 사업의 신진연구인력 지원비, 국제협력 경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② 신진연구인력 지원비는 박사후과정생, 계약교수 월 3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신진연구인력 채용 시 급여, 법정 보험, 퇴직금, 근무조건, 의무,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③ 신진연구인력은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계약기간) ① 신진연구인력 채용 계약은 1년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계약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해임 등) 계약기간 중 신진연구인력의 교체, 해촉 등 변경사항은 추천한 교수의 서면요구에 따라 사업단장이 결정한다.

제7조(의무) 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의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사업단 내의 연구에 전념해야 하며 4단계 BK21 사업에서 요구하는 연구실적 제출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제8조(강의) 신진연구인력이 시간강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외부에서 주·야간을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제한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1호】

신진연구인력 추천서

사업단장 귀하:

김OO (주민등록번호: xxxxxx)은 OO대학교를 졸업(학사)하고 OO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신진연구인력으로 추천합니다.

<작성요령>

예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형식으로 추천서를 작성하고, 신진연구인력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사업단에 제출한다.

<추천 교수가 신진연구인력에게 공지하여야 할 사항>

- 사업단의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사업단 내의 연구에 전념해야 하며 4단계 BK21사업에서 요구하는 연구실적 제출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 시간강의를 할 경우에는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외부,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당 6시간 이하로 제한한다.
-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는 월 300만원 이상의 신진연구인력 지원비를 지급한다. 추후 사업단에 지원비를 수령할 은행계좌를 제출하여야 한다.

20〇〇 년 〇월 〇〇일

추천 교수: (인)

4단계 BK21 사업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 귀하

신진연구인력 변경서

사업단장 귀하:

신진연구인력이었던 김OO (박사후과정생, 주민등록번호: xxxxx)가 20○○년 ○월에 취업하였기에 (또는 ○○○는 4단계 BK21사업 성과지표 달성에 충분하지 못한 환경이 발생하여), 20○○년 ○월을 기하여 해촉하고자 합니다.

<작성요령>

예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형식으로 변경서를 작성하고, 신진연구인력이 작성한 사직서를 첨부하여 사업단에 제출한다.

<추천 교수가 신진연구인력에게 공지하여야 할 사항>

- 계약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만 해촉할 수 있다.
- 해촉 후에도 4단계 BK21 사업 사업에서 요구하는 연구실적 제출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20○○년 ○월 ○○일

추천 교수: (인)

4단계 BK21 사업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 귀하

【서식 1-3호】

BK21 신진연구인력 외부출강(20 년도 ○학기)

BK21 신진연구인력은 주당 6시간 이내의 출강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다음과 같이 학내외 출강을 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대학교	학 과	교과목	강의시간	시 수	비 고
			월 3-5교시	3	
계					

2000년 ○월 ○○일

작성자 : (인)

4단계 BK21 사업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 귀하

신진연구인력 고용계약서

본 계약은 충남대학교총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신진연구인력_____ (이하 “을”이라 한다)과 _____ 교육연구단(팀) 단장(이하“병”이라 한다)의 계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소속(활용기관) 및 직급】

- ① 소속 : _____ 교육연구단(팀)
- ② 직급 : _____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제3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① 근무장소 : _____
- ② 업무내용 : _____
- ③ “병”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근로시간 및 휴게】

- ① “을”은 아래의 근로일, 시업 및 종업시간의 범위 내에서 **1주 40시간을** 근무한다.
· 근로일 : 월~금 (주5일) · 시업 및 종업 : 09:00~18:00 · 휴게 : 1시간 (12:00~13:00)
- ② “병”은 업무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근무일 및 근무시간·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병”은 필요한 경우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와 휴일·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한다. _____ (서명)
- ④ “을”은 제1항의 근로시간 외 연장·휴일·야간근로가 필요한 경우 초과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은 승인된 초과근로 신청사항에 한하여 **대체휴가**를 준다.

【제5조 휴일 및 휴가】

- ① 유급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
- ②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 ③ “갑”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을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휴일은 근로일이, 기존의 근로일은 휴일이 된다.
- ④ 연차유급휴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6조 임금】

- ① 임금에 관한 사항은 20 년 월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 ② “을”의 임금은 年 _____ 원으로, 12등분하여 매월 균등하게 분할지급(月 _____ 원)하며(세전급여), 당월 초일 기산하고 당월 말일 마감하여 당월 25일에 “을”의 금융기관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연구비 임금이 지연될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에 동의한다. _____ (서명)
- ③ 제1항의 보수 자원(월급여,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총당금)

연번	지원기관	연구책임자	과제명 과제번호)	지급(참여)기간		보수 자원		
				시작일	종료일	급여	기관부담금	퇴직총당금
1						(연급여 의 금액)	연급여의 11%(천원 단위절사)	

- ④ 매월 지급되는 임금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구성항목	지급월	과제명 (과제번호)	임금 총액(月) (기본급+식비)	기본급	식비
금액(원)					

- ⑤ “을”이 결근 또는 중도 입/퇴사 등의 사유발생 시 교육연구단(팀)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토록 한다.
- ⑥ 연구비 관련 규정에 따른 기여도 평가에 따라 연구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제7조 기밀유지】

“을”은 임금 수준 및 임금명세서, 업무 중 취득한 정보 등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토록 한다.

【제8조 퇴직급여】

“병”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9조 중도사직】

- ① “을”은 사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희망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직 이전에 인수인계, 서류 보존 등 “병”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직 희망일까지 사직이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직원이 제출된 날이 속한 달의 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종료이전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은 교육연구단(팀)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준수 의무】

- ① “을”은 “갑”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연구단(팀)의 발전을 위해 성실히 근로해야 한다.
- ② “을”은 “병” 및 “병”의 고객에 대하여 취득한 업무내용 및 비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병”의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누설 및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을”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본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④ “을”은 연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병”의 허락 없이는 외부에 발표하지 못한다.
- ⑤ “을”이 생산한 모든 연구결과물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 “을”은 매년 4대 폭력 예방교육(4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해지】

- ① “갑”은 “을”이 계약기간 중 충남대학교 활용기관의 업무지침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다.
- ② “을”은 활용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별첨의 서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갑”은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용계약 시 제출한 증명서 또는 업적 실적물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2. 지원기관의 사업 중단 또는 특별한 사유로 지원기관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을 때

【제12조 근태관리】

“을”의 근태관리는 “병”이 한다. “을”의 연구지도 및 업무 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에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는 것에 동의한다.

_____ 교육연구단(팀)장 (서명)

【제13조 기타사항】

- ①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갑”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병”은 “을”의 참여한 사업(과제)의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이 중단 되거나 조기 종료 등의 사유로 연구비가 변경된 경우 상호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내부규정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2020 년 월 일

[갑] 충남대학교총장 이 진 숙 (인)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을] 신진연구인력 (인)

주소 :

[병] 교육연구단장(팀) 강 종 성 (인)

주소 : 대적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위 연구원은 고용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해 이해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고용계약서 1부를 서면으로 교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 _____



참여대학원생 선발 및 지원 지침

4단계 BK21 사업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선발 및 지원 지침

2020. 12. 1.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4단계 BK21 사업 인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의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참여대학원생"이라함은 4단계 BK21 사업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약학과 소속 전일제로 등록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을 말한다.

②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 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연구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라 참여대학원생과 지원대학원생으로 구분한다.

③ 외국인 대학원생이 참여대학원생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장학금을 받는 지원 대학원생 선발은 내국인을 우선한다.

④ 외국인 대학원생이 사업단 내에서 연구과제에의 참여, 학술번역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을 하는 경우 사업단장이 대학원생 지원비의 지원 단가 범위에서 연구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기간) 참여대학원생 및 지원대학원생의 지원 가능 기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단, 동 기간에 휴학 및 군입대 등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및 석사 수료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및 박사 수료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및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제4조(선발) ① 지원대학원생은 교육 및 연구역량(SCI급 논문게재 실적, 학진 등재지 논문게재 실적,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 실적, 그 외 연구과제 수행능력)이 우수한 참여대학원생의 70% 이내를 학기별로 참여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4단계 BK21 사업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제5조(의무) ① 참여대학원생은 소속 학과에서 주당 40시간 이상 수업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4단계 BK21 사업에서 요구하는 연구실적 등을 제출할 의무와 향후 진로현황 분석에 필요한 취업 여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② 지원대학원생은 교육부 훈령에 따라 지원 내역에 관한 정보를 향후 한국연구재단 DB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①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의 대학원생 지원비, 국제협력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② 대학원생 지원비는 석사과정 월 70만원 이상, 박사과정 월 130만원 이상, 박사 수료생 월 100만원 이상을 익월 10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한 학기 지원비를 장학금 형태의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 ③ 지원대학원생은 타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타 장학금을 중복하여 수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지원대학원생이 월 중간에 참여종료 시 참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졸업으로 인한 참여종료의 경우 해당 월을 모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참여대학원생의 14일/년 이내의 휴가의 경우, 사업 참여 및 연구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다.

제7조(교체 등) 학기 중 참여대학원생 및 지원대학원생의 교체, 해촉 등 변경사항은 참여 교수의 서면요구에 따라 사업단장이 결정한다.

제8조(강의) 참여대학원생이 시간강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외부에서 주·야간을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제한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BK21 지원대학원생 추천서

사업단장 귀하:

참여대학원생 중에서 지원대학원생을 교육 및 연구역량(SCI급 논문게재 실적, 학진 등재지 논문게재 실적,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 실적, 그 외 연구과제 수행능력)에 따라 다음의 우선순위로 추천합니다.

- 석사과정:

- 박사과정:

<작성요령>

지도학생을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구분하여, 대학원생지원비 수혜를 추천하는 우선순위가 높은 학생부터 참여대학원생 모두의 이름을 기입한다.

<참여교수가 대학원생에게 공지하여야 할 사항>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에서 요구하는 연구실적 등의 제출 의무와 향후 진로현황 분석에 필요한 취업 여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면허증 대여 등의 행위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자는 보험혜택을 해지할 경우만 참여대학원생이 될 수 있다.

-대학원생 지원비는 석사과정 월 70만원 이상, 박사과정 월 130만원 이상, 박사수료생 월 100만원 이상을 익월 10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추후 사업단에 지원비를 수령할 은행계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도교수: (인)

4단계 BK21 사업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 귀하

BK21 지원대학원생 변경서

사업단장 귀하:

지원대학원생이었던 김OO (석사과정, 주민등록번호: xxxxxx)이 20○○년 ○월에 취업하였기에 (또는 xxx는 BK21사업 성과지표 달성에 충분하지 못한 환경이 발생하여), 20○○년 ○월을 기하여 송OO (석사과정, 주민등록번호: xxxxxx)으로 변경을 추천합니다.

<작성요령>

예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형식으로 제출한다.

<참여교수가 대학원생에게 공지하여야 할 사항>

-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에서 요구하는 연구실적 등의 제출 의무와 향후 진로현황 분석에 필요한 취업 여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 면허증 대여 등의 행위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자는 보험혜택을 해지할 경우만 참여대학원생이 될 수 있다.
- 대학원생 지원비는 석사과정 월 70만원 이상, 박사과정 월 130만원이상, 박사수료생 월 100만원 이상을 익월 10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추후 사업단에 지원비를 수령할 은행계좌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지도교수: (인)

4단계 BK21 사업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 귀하

【서식 2-3호】

전일제 학생 협약서

성명:

학번:

주민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4단계 BK21 사업 참여대학원생 자격 기준에 의거 충남대학교 대학원 약학과에서 주당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 학생임을 협약합니다.

20〇〇 년 월 일

협약자: (인)

지도교수: (인)

4단계 BK21 사업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 귀하

4단계 BK21 사업 참여인력 서약서

- 교육연구단(팀)명 : (교육연구단(팀)장 :)
- 참여자 성명 : (생년월일 :)
- 참여구분 : 참여교수 / 신진연구인력 / 산학협력 전담인력 / 참여대학원생

상기 본인은 4단계 BK21 사업 참여자로서 사업 훈령과 규정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4단계 BK21 사업 참여자로서, 사업 훈령 및 지침 상 명시되어 있는 참여 자격 기준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을 확인합니다.
2.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연구단(팀)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비롯한 사업비와 관련한 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충실히 준수하고 집행하겠습니다.
3.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인건비와 관련한 아래의 유의사항을 항상 준수하며,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예방 및 사업비의 목적 외 집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각 개인의 통장·도장 일괄 관리 및 일정 금액을 회수하여 공동 관리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
- ✓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등 부당한 지시·요구 확인 시 관련 기관에 즉시 알림

년 월 일

성명 (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귀하

【서식 2-5호】

BK21 참여대학원생 동의서

성명(영문) :
학위과정(학기) :
학 번 :
주민번호 :
전화번호 :
이 메 일 :
연구자등록번호 (KRI 등록):

상기 본인은 4단계 BK21 사업 선정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현황 조사에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대학,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는 것을 동의하며 졸업 후 이들 정보를 활용하여 경제활동 상황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대학원생 (인 또는 사인)

4단계 BK21 사업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 귀하

【서식 2-6호】

졸업생 취업 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회사 또는 상호명 (근무처 주소)

연락처: 회사 전화번호 (개인 핸드폰 번호)

상기 본인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약학과를 2000 년 0월에 졸업하고, 2000 년 0월 00일부터 000000에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00 년 0월 00일

확 약 자: (인)

4단계 BK21 사업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 귀하

BK21 사업 참여 변경요청서

성 명 :

소 속 :

과 정 :

학 번 :

장학금지원여부 : 지원(), 비지원() *참여여부 변경 전까지 해당하는 부분 체크

위 본인은 () 사유로 4단계 BK21 사업 참여대학원생에서
([날짜기재. \(예시\)2020.08.01.](#))부터 제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20년 월 일

본 인 : (인)

지도교수 : (인)

4단계 BK21 사업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 귀하

【서식 2-8호】

BK21 참여대학원생 외부출강(20 년도 ○학기)

본인은 다음과 같이 학내외 출강을 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대학교	학 과	교과목	강의시간	시 수	비 고
			월 3-5교시	3	
계					

20○○년 ○월 ○○일

작성자 : (인)

4단계 BK21 사업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 귀하

【서식 2-9호】

참여대학원생 휴가 요청서

성 명 :
소 속 : 충남대학교 약학과
과 정 :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중 택 1
학 번 :
기 간 : 2021년 3월1일부터 2021년 3월 14일까지 ()일 간

위 본인은 () 사유로 해당 기간 동안 유급 휴가를 요청합니다.

2021 년 월 일

본 인 : (인)

지도교수 : (인)

4단계 BK21 사업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 귀하



국제협력사업 운영 및 지원 지침

4단계 BK21 사업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

국제협력사업 운영 및 지원 지침

2020. 12. 1. 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은 4단계 BK21 사업의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의 국제협력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제협력사업이라함은 참여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 포함)의 해외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 참여대학원생 해외연수, 해외석학 초빙 등을 의미한다.

제3조(지원) ① 국제협력 경비는 참여대학원생이 주체가 되는 경우에 한해 참여교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며, 참여교수 단독 또는 신진연구인력과 함께 국제학회에 참석할 경우 참여교수의 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② (국제학술회의) 국고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회의는 사업단장이 대학원생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해외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에 대한 지원은 발표 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저자 또는 지정토론자에 한하여 항공료(이코노믹클래스 기준), 등록비, 체재비 등의 지원 단가는 충남대학교 여비규정에 따른다.

③ (해외연수) 연수경비는 참여대학원생에 한하여 항공료(이코노믹클래스 기준), 연수비, 체재비 등을 지원하며, 여비일수는 원칙적으로 연수기간과 일치하도록 지급한다. 단가는 충남대학교 여비규정에 따른다. 1개월 이상의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협력 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에 대학원생지원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해외석학 초빙) 해외석학 초빙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교수나 연구자를 초빙하여 공동 연구 진행, 세미나 및 학술회의 개최 등을 의미하고, 경비는 항공료(실비처리), 체재비(실비처리), 연사료 등을 지원하며 지원비용은 충남대학교 규정에 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제협력사업 운영 방식

- ① **지원범위** : 참여대학원생의 해외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의 지원은 교수 포함 300만원/연 이내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예외사항을 둘 수 있다.)
- ② **지원대상** : 참여대학원생 중 국제학회의 초청연자, 수상자, 구두 발표자, 포스터 제 1 저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 국제학술대회 기준

- ① 4개국 이상이 참여
- ②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 ③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

※ 지원대학원생 기준

- ① 발표 논문 저자 중 1인만 지원

국제학술회의 참가 결과보고서(학생용)

연수자	성명		소속	학과	
				학번	
학회명					
주관기관					
학회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국외여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요성과					
<p>상기 본인은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4단계 BK21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수행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연수자 : (인)</p> <p style="text-align: right;">확인자(지도교수) : (인)</p> <p>[별첨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표논문 초록집 표지 및 초록 사본 2. 항공권 원본 3. 출입국 사실증명서 원본 4. 학회에서 발행하는 등록비영수증 5. 국제학술대회 충족확인서 <p>4단계 BK21 사업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 귀하</p>					

【서식 3-3호】

국제학술회의 참가 경비 지원신청서(신진연구인력용)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전화)	(이동통신)	(E-Mail)
학회명				
주관기관				
학회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국외여행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최장소				
연수목적				
신청금액 및 산출근거	등록비		항공비 (실소요경비)	
	방문국 급수	가, 나, 다	은행명	
	숙박비	000원/일 x 0일 =	계좌번호	
	식비	000원/일 x 0일 =	환율	USD 1\$(200 . . .)기준 = 원
	일비	000원/일 x 0일 =	총비용	
	지원요청액 ¹⁾		지원요청액 산출근거	<input type="checkbox"/> 등록비 <input type="checkbox"/> 항공비 <input type="checkbox"/> 체재비
<p>상기 본인은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4단계 BK21 사업단의 국제협력 사업에 지원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지원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확인자(지도교수) : (인)</p> <p>[별첨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비가 표시된 학회등록증명서와 학회등록비 카드영수증 2. 발표논문 초록 사본 3. 학회 일정표 4. 항공일정표가 있는 invoice 및 항공료 카드영수증 5. 국제학술대회 총족확인서 6. 출장신청서 7. 통장사본 <p>4단계 BK21 사업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 귀하</p>				

* ¹⁾은 3,000,000원을 넘을 수 없음

【서식 3-4호】

국제학술회의 참가 결과보고서(신진연구인력용)

연 수 자	성 명						
학 회 명							
주관기관							
학회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요성과							
<p>상기 본인은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4단계 BK21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수행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연수자 : (인)</p> <p style="text-align: right;">확인자(지도교수) : (인)</p> <p>[별첨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표논문 초록집 표지 및 초록 사본 2. 항공권 원본 3. 출입국 사실증명서 원본 4. 학회에서 발행하는 등록비영수증 5. 국제학술대회 총족확인서 <p>4단계 BK21 사업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 귀하</p>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교수용)

1. 여행계획 요약

여행목적, 배경 및 효과						
여행기간						
여행국						
여행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여행경비			사업단 지원 신청액	다른 기관 지원액 및 지원기관	
	등록비					
	합계					
여행경비 부담기관						

* 작성요령

1. 여행국의 ()는 경유국(항공편 이용에 따른 단순 경유국을 말함)을 기재
2. 소속은 학과(부)까지 기재
3. 직명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직명을 기입

2. 여행 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비고

3. 여행 경비

구분	계	항공료	체 재 비			기타	비고 (경비지원처)
			일비	숙박비	식비		
자비							
지원경비							
합계							

USD \$ 환율기준(년 월 일) = 원

 년 월 일

 작 성 자 (인)

 확 인 자 강 종 성 (인)

※ 확인자는 사업단장임

서 약 서

본인은 4단계 BK21 사업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 미래인재양성 사업단의 국제화경비 지원에 있어 사업단의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국제화경비 지출에 있어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본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국제화경비 일체는 사업단 및 4단계 BK21 사업국제교류협력 사업 관리지침의 지급 기준을 준수하며, 사업단에서 승인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않는다.
2. 국제화경비 지출은 사업단에서 승인된 증빙서류에 따라 계좌이체 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국제협력 행사의 불참, 취소 및 지원 자격상실 등으로 정상적인 참가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또는 결과보고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단에서 지원한 제반 비용(선지원금 총액, 수수료, 기타경비 등)을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사업단 계좌로 전액 환불한다.
3. 국제학술대회 등록비 지출에 있어 상대국의 국제처리 지연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지원한도 초과 사용액은 사유발생 7일 이내에 해당된 초과액을 사업단 계좌로 환불한다.

년 월 일

서 약 인 소속: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지도교수 성 명 : (인)

4단계 BK21 사업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 귀하

출 장 신 청 서

제 호						
20 . . .						
결 재	담당	지도교수	사업단장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 급	학 번	성 명	출장 목적	기 간	출 장 지	서명 또는 날인
이동사항 : 대전 → 인천 → → 인천 → 대전						
여 비 계 산	4단계 BK21 사업 지원					

산업체 대응자금 운영 및 산학협력 관련 지침

4단계 BK21 사업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

산업체 기술지도 시행세칙

2020. 12. 1. 제정

제1조(목적) 충남대학교 4단계 BK21 사업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체 기술지도의 평가,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업체 기술지도는 사업단 소속 교수가 갖고 있는 노하우, 아이디어 등을 활용하여 BK21 참여 산업체의 애로사항에 관해 컨설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상업체) 기술지도는 본 사업단에 참여한 업체를 우선으로 한다. 단, 참여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산업체 기술지도 협약”을 체결한 후에 기술지도 한다(산업체 기술지도 협약서, 제1호 서식)

제4조(역할) 선정된 기술지도 담당자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① 산업체로부터 기술지도 요청이 있을 때, 애로기술을 파악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전문가에게로 연결
- ② 산업체와 본 센터 배출 학생 간의 인턴십 및 취업 알선
- ③ 기타 모든 산학협력 활동의 창구 역할

제5조(의무) ① 산업체 기술지도를 실시한 교수는 방문활동내역에 대해서 기술지도일지(산업체기술지도 제2호 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은 산업체는 기술지도 평가의견서(산업체기술지도 제3호 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지도비 지급) 산업체 기술지도 활동에 대하여 1일 2시간 이상 기준으로 1회에 10만원의 기술지도비를 지급한다. 단 동일인에 대하여 년 최대 5회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성과급 운영 지침

4단계 BK21 사업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운영지침

제정 2020. 12. 01.

개정 2021. 01. 25.

개정 2021. 01. 26.

제1조(목적) 본 지침은 4단계 BK21 사업인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의 대학원생 인센티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 대학원생 인센티브 경비는 국고지원금 중에서 대학원생 지원비(연구장학금)에서 주로 지급하고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단운영비에서 책정할 수 있다.

제3조(대상) 대학원생 인센티브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연구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대학원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방법) ① 대학원생 인센티브는 회계연도에서 학기별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학원 인센티브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평가지표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③ 대학원생 인센티브는 SCI(E)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논문, 특허등록, 학회참여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제5조(성과급지급) 대학원생의 성과급은 <별첨 1>에 따라 지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참여대학원생 성과지표별 성과 점수

1. 참여대학원생 성과지표별 성과 점수표

성과 지표			기준 점수				
논문 ¹⁾	논문 구분	한국 연구재단 등재	10점				
		SCI(E)	IF<1	1≤IF<3	3≤IF<5	IF 5 이상 또는 카테고리별 상위10%	IF 10 이상
			10점	30점	50점	100점	200점
특허 ²⁾	국내특허등록		30점				
	국제특허등록		60점				
학술 발표 ³⁾	국내학술대회발표(포스터)		3점				
	국내학술대회발표(구두)		5점				
	국제학술대회발표(포스터)		5점				
	국제학술대회발표(구두)		10점				
	* 수상 시는 기준점수의 2배						
사업단 참여도	대학원생 참여 산학연구 실적 ⁵⁾		논문: 5점/건		포스터: 2점/건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5점/회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여		5점/회				
	대학원생 약료복지활동 참여		5점/건				
	영어 졸업논문 작성 ⁴⁾		15점/건				
	모듈 교육 참여		10점/모듈				

^{1,3)}논문과 학술발표는 신청자가 제1저자로 소속이 충남대학교 약학대학이며,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교신저자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¹⁾발간예정 논문: 제출된 논문이 학생 졸업(종료)시점까지 게재 수락 되어 발간 예정인 경우에도 실적으로 인정하여 기준점수를 부여한다.

²⁾특허는 산학협력단, BK21 사업에 참여한 기업체 등 기관이 출원인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⁴⁾외국인은 제외

⁵⁾산업체 소속의 저자가 포함된 경우로 점수는 중복 인정한다.

2. 성과급 액수: 평가지표의 각 항목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지급액(1점/만원)을 결정한다. 동일 회계연도에서 참여대학원생의 성과급은 일인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지원범위: 하나의 특허, 논문 및 학회발표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 1저자 또는 실제로 발표하는 참여대학원생 1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4. 성과급 신청 기간: 학기별 공고일 후 10일 이내

참여대학원생 성과보고서

신청자 성명		(인)	학번				
참여구분		<input type="checkbox"/> 지원 <input type="checkbox"/> 비지원					
지도교수		(인)					
평가항목			건수	점수	계산	최종점수	
연구 실적	1) 논문	SCI(E) 논문	IF 1미만			점	
			IF 1이상~3미만			점	
			IF 3이상~5미만			점	
			IF 5이상 또는 상위 10%			점	
			IF 10이상			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논문					점
	2) 특허	국내특허등록					점
		국제특허등록					점
	3) 학술 발표	국내학술대회발표(포스터)					점
		국내학술대회발표(구두)					점
		국제학술대회발표(포스터)					점
		국제학술대회발표(구두)					점
	사업단 참여도	대학원생 참여 산학연구(논문)					점
		대학원생 참여 산학연구(포스터)					점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점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여					점
		대학원생 약료복지활동 참여					점
		영어 졸업논문 작성					점
		모듈 교육 참여					점
	총계 (점)						점

1) 논문(주소에 충남대학교 약학대학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① SCI(E)논문 기준점수
 -IF 1미만 10점, 1이상~3미만 30점, 3이상~5미만 50점, IF 5이상 또는 카테고리별 상위10% 100점, IF 5이상 200점
 -참여교수가 교신저자이고, 참여대학원생이 제1저자: 위 기준점수를 부여

② 한국연구재단 등재 논문 10점

2) 특허(산학협력단, BK21 사업에 참여한 기업체 등 기관이 출원인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국내특허 30점, 국제특허 60점

3) 학술발표(주소에 충남대학교 약학대학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국내학술대회발표(포스터): 3점, 국내학술대회발표(구두): 5점
 -국제학술대회발표(포스터): 5점, 국제학술대회발표(구두): 10점
 (수상 시 위 각 기준 점수의 2배)

4) 사업단참여도

-대학원생 참여 산학연구 실적: 논문 5점/건, 포스터 2점/건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5점/회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여: 5점/회
 -대학원생 약료복지활동 참여: 5점/건
 -영어졸업논문작성: 15점/건(내국인에 한함)
 -모듈 교육 참여: 10점/건

* 하나의 특허, 논문 및 학회발표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1저자 또는 실제로 발표하는 참여대학원생 1명에 대해서만 지원함
 * 평가지표의 각 항목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1점/만원을 지급함

붙임 [서식 5-2] 연구실적 현황표 및 붙임 증빙자료 각 1부.

년 월 일

4단계 BK21 사업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 귀하

【서식 5-2-1호】

성 명 :

학 번 :

지도교수 :

◆ SCI(E)급 학술지논문 게재

연번	게재논문명	게재 학술지명 (ISSN)	발행기관	구분 (SCI, SCIE)	총 저자수	저자현황	발행번호 (권,호,쪽)
						저자명은 논문에 게재 된 순서대로 기입하며, 저자 중 BK21 참여저 자에 밑줄로 표기	
총계		편					점

[붙임]

1. 발표논문 별쇄본 각 1부
2. 게재 학술지 목차 사본 각 1부 (발표 연월일, 발표자, 논문제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최근 년도 IF(인용지수) 및 ISSN 확인가능 출력물 각 1부

【서식 5-2-2호】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논문 게재

연번	게재논문명	게재 학술지명 (ISSN)	발행기관	구분 (등재, 등재후보)	총 저자수	저자현황	발행번호 (권,호,쪽)	
						저자명은 논문에 게재된 순서대로 기입하며, 저 자 중 BK21 참여저자에 밑줄로 표기		
총계		편						점

[붙임]

1. 발표논문 별쇄본 각 1부
2. 게재 학술지 목차 사본 각 1부 (발표 연월일, 발표자, 논문제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재단 등재 확인서(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출력물) 각 1부.

【서식 5-2-3호】

◆ 국내/국제 특허 등록 실적

구분 (국내/국제)	등록국가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년.월.일)	등록인
총계	건				점

[붙임]

1. 특허등록 사본 각 1부.

【서식 5-2-4호】

◆ 국내 및 국제 학술발표

연번	구분		학술대회명	주관기관	학회기간 (년,월,일)	개최장소	발표논문명	
	국내/ 국제	구두/ 포스터						
총계	건							점

[붙임]

1. 초록집 표지 각 1부 (학술대회 일정 및 장소, 주관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해당)목차 및 초록 사본 각 1부 (발표자 또는 초록제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국제학술대회 총족 확인서 각 1부.

【서식 5-2-5호】

◆ 사업단 참여도-산학연구 논문/포스터

연번	구분	참여 기업체	게재논문명	게재 학술지명 (ISSN)	발행기관	구분 (등재, 등재후보)	총 저자수	저자현황
	산학연구 논문							저자명은 논문에 게재 된 순서대로 기입하며, 저자 중 BK21 참여저 자에 밑줄로 표기
	산학연구 포스터							
총계	건							점

[붙임]

1. 발표논문 별쇄본 각 1부
2. 게재 학술지 목차 사본 각 1부 (발표 연월일, 발표자, 논문제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최근 년도 IF(인용지수) 및 ISSN 확인가능 출력물 각 1부

【서식 5-2-6호】

◆ 사업단 참여도-의약품안전사용 교육/진로탐색 프로그램/대학원생 약료복지활동 참여/영어 졸업논문 작성/모듈 교육 참여

연번	구분	내용	날짜	장소	
총계	건				점

신진연구인력 성과급 운영지침

제정 2020. 12. 01.

개정 2021. 01. 25.

제1조(목적) 본 지침은 4단계 BK21 사업의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의 성과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 신진연구인력 성과급적 경비는 국고지원금 중에서 신진연구인력지원비에서 책정한다.

제3조(대상) 신진연구인력 성과급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연구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단의 신진연구인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방법) ① 사업단의 신진연구인력 성과급은 회계연도에서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신진연구인력의 성과급은 SCI(E) 논문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제5조(평가 및 성과급지급) 신진연구인력의 성과급은 <별첨2>에 따라 지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첨2> 신진연구인력 성과지표별 성과 점수

1. 신진연구인력 성과지표별 성과 점수표

성과 지표				기준 점수				
논문 ¹⁾	참여교수	신진 연구인력	논문 구분	IF<1	1≤IF<3	3≤IF<5	IF 5 이상 또는 카테고리별 상위10%	IF 10 이상
	교신저자	제1저자	SCI(E)	10점	30점	50점	100점	200점
		제1저자	한국연구 재단등재	10점				

¹⁾논문 주소에 충남대학교 약학대학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성과급 액수: 평가지표의 각 항목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지급액(1점/만원)을 결정한다.
동일 회계연도에서 신진연구인력의 성과급은 일인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하나의 논문에 대한 신진연구인력 성과 점수는 신진연구인력 1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신진연구인력 성과보고서

신청자 성명			(인)			
평 가 항 목			건수	기준점수	최종점수	
연구 실적	SCI(E) 논문	제1저자	IF 1미만		10점	<i>(건수x기준액수)</i> 점
			IF 1이상~3미만		30점	<i>(건수x기준액수)</i> 점
			IF 3이상~5미만		50점	점
			IF 5이상 & 상위 10%		100점	점
			IF 10이상		200점	점
총계					점	
<p>1) SCI(E)논문 기준점수 -IF 1미만 10점, 1이상~3미만 30점, 3이상~5미만 50점, IF 5이상 또는 카테고리별 상위10% 100점, IF 5이상 200점 -참여교수가 교신저자이고, 신진연구인력이 제1저자: 위 기준점수를 부여</p> <p>※ 하나의 논문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1저자 신진연구인력 1명에 대해서만 지원함. 동일회계연도에서 신진연구인력의 성과급은 일인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평가지표의 각 항목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1점/만원을 지급함</p>						
<p>붙임 [서식 5-2] 연구실적 현황표 및 붙임 증빙자료 각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4단계 BK21 사업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 귀하</p>						

참여교수 성과급 운영지침

제정 2020. 12. 01.

개정 2021. 01. 25.

개정 2021. 02. 01.

제1조(목적) 본 지침은 4단계 BK21 사업의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의 성과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 성과급적 경비는 국고지원금 중에서 사업단운영비 및 간접비 에서 책정한다.

제3조(대상) 성과급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연구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단의 참여 교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방법) ①사업단의 참여교수 성과급은 회계연도 최종월에 지급한다.

②참여교수의 성과급은 성과지표별 성과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③참여교수의 활발한 국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

제5조(평가 및 성과급지급) 참여교수 성과급은 <별첨3>에 따라 지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3> 참여교수 성과지표별 성과 점수

1. 실적산정기간 : 해당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실적으로 산정한다.
(연구비 및 기술이전은 입금일 기준)

2. 성과 점수

가. 평가항목 및 점수

- 1) SCI(E)논문: $IF \times \text{참여비율}$ (4단계 BK21 사업 기준) $\times 15 \times \text{가산점}$
(가산점은 학문분야 상위 10% 잡지와 IF 5점 이상은 2, Q1등급의 경우 1.5를 부여)
- 2) 연구비: 정부연구비 500만원 당 1점, 산업체연구비 250만원 당 1점
(해외재원 2배 가산점)
- 3) 특허등록: 20/발명자 수(국내특허), 80/발명자 수(국제특허)
- 4) 기술이전: 30만원 당 1점, 기술이전 건당 5점을 추가로 부여
- 5) 국제학회 포스터 발표: 5점/회(교신저자에 한함/별도표시가 없을시 마지막 저자)
- 6) 국제학술활동: 국제학회에서 좌장, 구두발표(초청강연포함) 및 수상 10점/회
(국제 학회는 4단계 BK21 사업 기준)
- 7) SCI(E) 논문심사: 2점/건
- 8) 산업체 기술지도: 5점/회 (1일 2시간 기준, 동일 업체에 대하여 년 5회 이내)
- 9) 국내외활동(국제학회조직위원, 교외 자문위원 활동, 언론매체보도): 5점/회
- 10) 융복합/BK모듈/팀티칭/현장전문가 참여 교과목 개발 및 운영: 5점/건
- 11) 대학원생 현장 연수: 15점/건(40시간 이상)
- 12) 대학원생 참여 산학연구 실적: 논문 5점/건, 포스터 2점/건
- 13)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5점/회
- 14) 진로탐색 프로그램: 1주 미만(40시간 미만) 5점/회, 1주 이상(40시간 이상) 10점/회
- 15) 대학원생 약료복지활동 참여: 5점/건

나. 총 성과 점수 결정 : 성과 점수 각 항목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총 성과 점수로 하며 24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평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기여도 점수

가. 평가항목 및 점수

- 1) 사업단 기여도: 100점 이하로 사업단장이 결정한다.
- 2) 사업단 참여도: 사업단 행사 및 회의 참여 실적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총 기여도 점수 결정 : 기여도 점수 각 항목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총 기여도 점수로 한다.

4. 성과급의 지급

가. 성과급은 사업단 회계 해당 년도 마지막 월에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지급하되 재단 규정의 성과급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성과급은 총 성과 점수와 총 기여도 점수를 합하여 1점당 1만원을 지급한다. 단, 합계 성과급은 예산에 맞게 지급한다.

¹⁾SCI(E)에서의 Impact Factor값으로 가장 최근 년도의 값을 대입한다.

²⁾특허는 산학협력단, BK21 사업에 참여한 기업체 등 기관이 출원인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사업단 행정직원 성과급 운영지침

2020. 12. 1. 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은 4단계 BK21 사업의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의 성과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 사업단 행정직원 성과급 경비는 국고지원금 중에서 사업단전담직원인건비에서 책정한다.

제3조(대상) 사업단 행정직원 성과급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사업단의 행정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방법) ①사업단의 행정직원 성과급은 회계연도에서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단 행정직원 성과급은 업무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제5조(평가 및 성과급지급) 사업단 행정직원 성과급은 <별첨1>에 따라 지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4> 사업단 행정직원 성과지표별 성과급 액수¹⁾

1. 업무출장

- 1) 업무 관련 출장 시 1회당 50,000원

2. 현장점검 준비

- 1) 한국연구재단 등 현장점검 준비 시 1회당 500,000원

3. 보고서 작성

- 1) 성과점검 보고서, 연차 보고서 등 작성 시 1회당 500,000원

4. 세미나 개최 및 준비

- 1) 세미나 개최 및 준비 시 1회당 100,000원

5. 사업단장 평가

- 1) 사업단장이 사업단 행정직원의 업무 수행이 뛰어나 사업단 관리 및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할 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¹⁾동일 회계연도에서 사업단 행정직원의 성과급은 일인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참여인력 논문 게재료 지원 지침

4단계 BK21 사업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

참여인력 논문 게재료 지원 지침

2020. 12. 1. 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은 4단계 BK21 사업인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단” 참여인력의 논문 게재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사업단은 “D4기반 혁신신약개발 스마트미래인재양성 사업”과 연관이 있는 연구 논문 게재를 위하여 사업단 참여인력의 논문 게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회계) 논문 게재료는 국고지원금 중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에서 책정한다.

제4조(지원) 참여인력 1인당 연 3,000,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5조(의무) 논문 게재료를 지원 받은 참여인력은 4단계 BK21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연구논문, 연구실적, 우수성과사례 등 관련된 정보를 사업단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